

이슈브리프 853호  
(2026. 6.11)

## 미·중 해외투자 통제 경쟁과 바이오안보의 함의

# 제853호

김현중 nicolas0121@inss.re.kr



## 국문초록

미·중 전략경쟁의 통제 수단이 수출통제와 관세를 넘어 해외투자, 공동연구, 기술인력 이동, 데이터 이전, 조달시장 접근 제한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2025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을 통해 기존 행정명령 기반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 법률 차원으로 제도화하고, 미국 자본과 미국인의 관여가 우려국의 전략기술 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현재 「COINS Act」의 대상 기술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정보기술, 고성능컴퓨팅, 극초음속 시스템이며, 바이오는 법문상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추가 기술 지정 구조와 최근 미국 내 논의를 고려할 때, 바이오 분야가 향후 투자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국은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자국 투자자의 해외투자를 관리하고, 금지·제한 기술, 서비스, 데이터, 인력의 해외 이동을 통제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양국 제도는 모두 해외 투자를 국가안보의 통제 지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미국은 우려국의 전략기술 발전 차단, 중국은 자국 기술·데이터 유출 방지와 외국 제한조치 대응에 초점을 둔다. 바이오가 「COINS Act」에 포함될 경우, 「Biosecure Act」의 조달·사용 제한과 「COINS Act」의 투자·자본 제한이 기능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한국은 중국 대체 바이오 파트너로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동시에 미국 규제와 중국 규정 사이의 복합적 컴플라이언스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바이오 안보 투자위험 평가, 민감 바이오기술 목록, 기업 컴플라이언스 지침, 한미 바이오안보 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COINS Act, 생물보안법, 투자규제, 바이오안보, 미중경쟁

미·중 전략경쟁의 통제 수단이 수출통제와 관세를 넘어 해외투자, 공동연구, 기술인력 이동, 데이터 이전, 조달시장 접근 제한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기존의 대미 외국인투자 심사제도인 CFIUS를 넘어, 미국 자본과 미국인의 관여가 우려국의 전략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른바 “역(Reverse) CFIUS” 성격의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2025년 12월 18일 미국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함에 따라, 동 법에 포함된 「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of 2025」, 즉 「COINS Act」가 확정되었다. 「COINS Act」는 재무부 장관에게 우려국 및 대상 기술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제도 운용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충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재무부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거래를 식별·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해외투자 통제는 보다 적극적 집행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COINS Act」의 핵심 대상 기술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공학,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기술, 고성능컴퓨팅 및 슈퍼컴퓨팅, 극초음속 시스템이다. 바이오·생명과학·제약·합성생물학은 현행 법문상 직접 명시된 대상 기술은 아니다. 그러나 「COINS Act」는 추가 기술 범주를 평가·지정할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의회와 정책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바이오 기업의 급성장과 글로벌 제약사의 대중국 기술도입·공동개발 확대를 배경으로 바이오 분야를 투자 제한 대상에 포함하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美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몰레나르(John Moolenaar)는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COINS Act」에 바이오 기술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해진다.<sup>1)</sup>

중국도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중국 경내(境内) 투자자의 해외투자를 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외투자 촉진과 투자자 권익 보호를 표방하지만, 해외투자 과정에서 국가가 금지·제한한 화물, 기술, 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가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금지하고, 기술인력 파견, 해외근무, 국경 간 기술지도, 교육훈련 등을 통한 우회 이전도 통제한다. 또한 외국 정부나 기업이 중국 투자자 또는 기업에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정부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양측의 규제 변화는 바이오 분야가 더 이상 보건·의료 산업의 일부에 머물지 않고, 경제안보, 데이터안보, 공급망안보, 연구안보, 국가안보가 교차하는 전략기술 영역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이오 기술은 제품이나 장비뿐 아니라 유전체·임상데이터, AI 기반 분석역량, 세포주·균주, 제조공정 노하우, 연구인력의 암묵지, 글로벌 CDMO·CRO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한다. 따라서 바이오 분야가 해외투자 통제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단순 지분투자뿐 아니라 공동연구, 합작법인, 펀드투자, 기술도입, 데이터 공유, 인력 이동까지 국가안보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 한국 바이오 기업은 미국 시장, 미국 자본, 글로벌 제약사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중국의 임상자원, 원·부자재, CRO/CDMO, 기술협력 네트워크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 대체 파트너로서의 산업적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미국의 투자·조달 규제와 중국의 기술·데이터 이전 통제 및 대응조치 가능성 사이에서 복합적 컴플라이언스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

1) 『서울경제』, “작년만 기술수출 185조 中 바이오에 제동...韓 반사이익 보나” (2026.06.01.)

## 「COINS Act」와 중국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COINS Act」의 기본 문제의식은 중국 등 우려국 내 기관들이 외국 적대국의 군사 현대화, 감시국가 구축, 인권침해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자본이 이러한 기술 발전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있다. 이 법안은 중국, 홍콩, 마카오 뿐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를 우려국 범위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중국 관련 거래뿐 아니라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우려국과 연결될 수 있는 기술협력, 투자, 펀드, 공급망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COINS Act」의 직접 규제 대상은 미국인이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미국 내 개인 또는 법인이 포함된다. 투자 금지·신고 체계에서는 미국인이 지배하는 외국 법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원칙적으로 곧바로 「COINS Act」의 직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구조에 미국 법인, 미국 투자자, 미국 벤처캐피털, 미국인 임원, 미국 기술, 미국 데이터, 미국 법인이 지배하는 외국 법인이 포함될 경우 미국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COINS Act」는 기존 행정명령 기반 해외투자 규제를 연방 법률로 격상하면서 재무부의 집행 권한, 예산, 조사 역량을 강화하였고, 규제 대상도 단순 지분투자를 넘어 이익권이나 이사회 지명권 등 사실상 지분투자와 유사한 권리를 수반하는 대출, 우려국 인물과의 합작투자 또는 우회거래, 그리고 벤처캐피털·사모펀드·펀드오브펀드 등 공동 투자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본, 경영권, 기술협력, 공동개발, 지배구조 상의 권리가 결합되는 거래를 민감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COINS Act」는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의와 조정도 포함한다. 다만 이는 동맹국에 유사 제도 도입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이라기보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양자·다자 협의를 수행하고 유사한 메커니즘 개발을 협력·장려할 수 있다는 정책적 지향에 가깝다. 한국에 대해서도 직접 의무 부과라기보다 향후 한미 협의에서 해외투자 통제 또는 투자 관련 안보 심사 논의가 제기될 수 있는 제도적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국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은 중국 경내(境內) 기업, 기타 조직, 주민 개인의 해외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규정상 대외투자는 자산, 권익 투입 또는 용자·담보 제공 등을 통해 해외 기업이나 자산의 소유권, 통제권, 경영관리권 및 기타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넓게 정의된다. 따라서 중국 기업이 한국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거나 한국 내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한중 합작법인을 만드는 경우 중국 측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조항은 기술·서비스·데이터·인력 이전 통제이다. 중국 투자자는 해외투자 과정에서 국가가 수출을 금지한 화물, 기술,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수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허가 없이 수출이 제한된 대상도 이전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술인력 파견, 해외 근무, 국경 간 기술지도, 교육·훈련을 통한 우회 이전도 금지된다. 이 조항은 AI나 바이오를 직접 열거하지 않지만, 금지·제한된 기술, 서비스, 데이터 및 인력 이전을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구조이므로 바이오, 유전체 데이터, 임상데이터, 합성생물학, 바이오제조 노하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본 규정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대응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향후 국내 기업들이 미국 규제 준수를

이유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축소할 경우, 중국 측의 보복성 대응이 현실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공통점과 차이점: 해외투자의 안보화와 美·中의 상이한 통제 논리**

「COINS Act」와 중국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은 모두 해외투자를 국가안보의 통제 지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양국 모두 해외투자를 단순한 민간경제활동이 아니라 자본, 기술, 데이터, 인력, 경영권, 공동개발 노하우가 이동하는 통로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전통적 수출통제의 초점도 물자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반면 아래 <표1>에서 보여주듯이 양국의 전략적 목적의 차이에 따른 정책적 접근법의 차이도 확연히 보여진다.

<표1> 양국 해외투자 제한 관련 법안의 차이점

구분	美 COINS Act	中 대외투자 규정	비교 포인트
기본 성격	미국인의 우려 국가 대상 해외투자 금지 및 신고 제도	중국 경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관리 제도	모두 해외투자를 국가안보 통제 대상으로 설정
핵심 목적	미국 자본이 우려 국가의 전략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차단	중국기술·서비스·데이터·인력의 해외 유출 관리	미국은 외향적 차단, 중국은 내향적 관리
규제 대상	미국인 및 미국인이 지배하는 외국 법인의 특정 거래	중국 기업·조직·개인의 해외 투자	규제 주체와 방향이 반대
대상 국가	중국, 홍콩, 마카오,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특정 국가 목록 X, but 중국 투자자의 해외투자 전반	미국은 우려 국가 목록 중심, 중국은 행정관리 중심
대상 기술	반도체, AI, 양자, 고성능 컴퓨팅, 극초음속 등	금지·제한된 화물, 기술, 서비스, 관련 데이터	미국은 기술목록 기반, 중국은 포괄적 표현
우회 거래 통제	외국인 지시 거래, 펀드투자, 합자 투자 등	인력파견, 해외근무, 기술지도, 교육훈련 통한 이전 금지	모두 비전통적 기술이전 경로를 통제
집행 방식	신고, 금지, 조사, 민사, Divestment 가능	승인, 안전심사, 자료제출 제한, 벌금 및 거래제한 가능	양국 모두 강제 집행수단 보유
국제 전략	동맹·파트너와 유사 메커니즘 협의 및 구축	외국의 차별적 제한에 대한 대응조치 근거 마련	미국은 동맹 조정, 중국은 반제재 대응

대표적으로 두 제도는 모두 우회거래 차단을 강조하며, 양국 모두 기술이 문서나 장비 형태로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구조와 인력 이동, 경영 참여, 암묵지 전수를 통해 이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COINS Act」는 미국인이 외국인을 통해 금지 또는 신고 대상 거래를 지시하거나 펀드 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려국의 민감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인 반면 중국의 규정은 기술인력 파견, 해외 근무, 국경 간 기술지도, 교육훈련을 통한 기술·데이터의 우회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목적과 방향도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OINS Act」는 미국 자본이 우려국의 전략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외향적 통제제도이다. 반면 중국 규정은 중국 투자자의 해외투자를 관리하고 중국의 기술·서비스·데이터·인력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며, 외국의 차별적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내향적·방어적 제도이다. 규제 방식 방식에서도 미국은 금지기술과 신고대상 기술을 구분하고 특정 기술목록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기술목록 기반 접근을 취하는 반면 중국은 본문에 구체적 기술목록을 나열하기보다 국가가 금지·제한한 화물, 기술, 서비스, 관련 데이터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정밀 표적형 규제에 가깝고, 중국은 관련 행정법령과 결합되는 포괄적 관리형 규제에 가깝다.

국제전략에서도 차이가 있다.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의, 정보공유, 유사 메커니즘 개발 장려를 포함한다. 중국은 외국의 차별적 제한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파트너와의 제도 조정을 지향하고, 중국은 외국의 제한조치에 대한 방어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는 형태를 보인다.

## 「Biosecure Act」와 「COINS Act」의 기능적 연계 가능성

「COINS Act」 본문은 「Biosecure Act」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제도가 법문상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능적·정책적 차원에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Biosecure Act」가 주로 조달·계약·사용 제한의 성격을 갖는다면, 「COINS Act」는 투자·자본·합작·경영참여 제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Biosecure Act」 논의는 중국 등 우려국 바이오 기업의 장비, 서비스, 데이터 인프라가 미국 연방 조달, 연방자금, 연구계약, 공급망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sup>2)</sup> 반면 「COINS Act」에 바이오가 포함될 경우, 미국 자본, 투자, 합작, 펀드투자, 경영참여가 중국 등 우려국의 전략 바이오 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전자가 조달·사용 제한이라면, 후자는 투자·자본 제한이다.

이 경우 두 제도는 중국 우려 바이오 기업의 미국 정부시장 접근과 미국 자본 접근을 동시에 어렵게 만들 수 있다. 「Biosecure Act」는 데이터 접근 경로와 공급망 사용 경로를 문제 삼고, 「COINS Act」는 바이오가 포함될 경우 데이터 기반역량 축적, 공동개발, 투자, 합작 구조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또한 「COINS Act」는 Non-SDN Chinese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mpanies List, Military End-User List, 1260H list, Entity List, FCC Covered List,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Entity List 등 기존 미국 안보 리스트와의 교차 검토구조를 포함한다. 즉 「Biosecure Act」에서 지정하는 “우려 바이오 기업(BCC)” 식별

2) 김현중, “미국방수권법에 편입된 생물보안법의 제도적 성격과 경제안보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이슈브리프』 제787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6.01.22.).

논리와 「COINS Act」의 투자위험 기업 식별 논리는 정책적으로 결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는 본문 상 확정된 직접 연계가 아니라 향후 행정부의 집행과 정책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결론적으로, 「Biosecure Act」와 「COINS Act」는 하나의 통합제도는 아니지만, 첨단 바이오 분야가 「COINS Act」에 포함될 경우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바이오안보 통제체계로 운용될 수 있다. 「Biosecure Act」가 조달·사용 제한을 담당하고, 「COINS Act」가 투자·자본 제한을 담당할 경우, 미국은 중국 우려 바이오 기업의 시장 접근과 자본 접근을 동시에 제한하는 정책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

### 한국에 대한 영향과 정책 대응

「COINS Act」에 바이오 분야가 포함될 경우 한국에는 산업적 기회와 안보적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법문에 바이오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이오 포함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한 분석이다. 산업적으로는 중국 대체 파트너로서 한국 바이오 기업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와 공동개발을 제한하면, 글로벌 제약사와 미국 투자자는 중국 외 대체 파트너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CDMO,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백신, 세포·유전자치료, mRNA, ADC, AI 신약개발, 임상개발 분야에서 일정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 우려기업 회피 수요가 증가할 경우 한국 기업은 신뢰 가능한 동맹국 기반 바이오 파트너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혜는 자동적이지 않다. 글로벌 제약사가 중국 기업과 협력해 온 이유는 저렴한 비용뿐 아니라 빠른 개발속도, 대규모 임상자원, 풍부한 데이터, 제조역량, 플랫폼 기술 때문이다. 한국이 중국 대체 파트너가 되려면 품질

관리, 규제 대응, 데이터보안, 공급망 투명성, 납기 안정성, 플랫폼 기술, 미국·EU 기준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AI 신약개발과 유전체·임상데이터 분야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 중국 AI 신약개발 기업과의 협력이 제한될 경우 한국 AI 신약개발 기업은 대체 협력 파트너로 주목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이 중국 데이터, 중국 클라우드, 중국 AI 플랫폼, 중국 임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면 미국 규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향후 글로벌 제약사는 기술력뿐 아니라 데이터 출처, 모델 학습자료, 개인정보 보호, 유전체 데이터의 국가별 이전 경로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 CRO·CMO와 바이오 스타트업은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형 기업은 중국 요소를 식별하고 대체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중소기업은 장비, 시약, 분석 소프트웨어, 하도급, 데이터 처리 서비스에서 중국계 공급망을 비가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수 있다. 「Biosecure Act」와 「COINS Act」가 기능적으로 결합될 경우, 미국 연방자금 프로젝트와 글로벌 제약사 공급망에서는 하도급 단계까지 중국 요소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안보적으로는 바이오가 투자안보, 데이터안보, 연구안보의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미국이 바이오를 「COINS Act」의 투자 제한 분야에 포함한다면, 이는 바이오가 반도체, AI, 양자, 고성능컴퓨팅과 유사한 전략기술로 취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도 바이오를 산업육성의 대상이자 국가안보 자산으로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첫째, 한국형 바이오안보 투자심사 또는 위험평가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식 「COINS Act」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선 바이오 분야 고위험 거래에 대한 신고, 점검, 위험평가, 기업 자율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대상은 우려국 관련 바이오 투자, 공동연구, 합작투자, 기술도입, 데이터 공유, 인력파견, 해외연구소 설립 등이 될 수 있다.

둘째, 민감 바이오기술 목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합성생물학, 유전자 합성, 바이오파운드리, AI 신약개발, 단백질 설계, 병원체·독소 관련 기술, 고위험 병원체 연구, 세포·유전자치료, mRNA, 바이러스 벡터, 유전체·임상데이터, 백신·필수의약품 제조 플랫폼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산업 전반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보다 국가안보 위험이 높은 특정 기술·데이터·거래 유형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용 바이오안보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한국 바이오 기업은 중국 파트너의 제재리스트 등재 여부, 군사·정보기관 연계 가능성, 미국 자본 관여 여부, 미국인 임직원의 의사결정 관여 여부, 데이터 출처와 이전 경로, 공동연구 계약상 기술이전 조항, 하도급 구조, 장비·시약·분석 플랫폼 의존도를 점검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trusted bio-supply chain’ 또는 ‘K-Biosecurity Compliance 인증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우려 기업의 장비·서비스·데이터 인프라와 분리되어 있고, 미국·EU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보안, 공급망 관리, 연구안보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넷째, 한미 바이오안보 협의 채널을 제도화해야 한다. 「COINS Act」와 「Biosecure Act」가 기능적으로 결합될 경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규제 변화에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미국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현실과 제도적 준비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미 간 바이오 공급망, 유전자합성 스크리닝, AI×Bio 이중용도 평가, 바이오

데이터 보호, CDMO 신뢰성 인증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COINS Act」와 중국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은 모두 해외투자를 국가안보 통제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COINS Act」 본문에 바이오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바이오 포함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Biosecure Act」의 조달·사용 제한과 「COINS Act」의 투자·자본 제한이 기능적으로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중국 대체 파트너로서 산업적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 규제와 중국 규정 사이의 복합적 컴플라이언스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첨단 바이오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은 기술 자체뿐 아니라 자본, 데이터, 인력, 공급망, 제도적 신뢰성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곧 국가 바이오안보 전략의 핵심 의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